

(재)금천미래장학회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3년 9월 14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9월 5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9월 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9월 14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행정안전국장 박은실)

가. 제안이유

- 금천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(재)금천미래장학회 사무국을 구청 지하1층에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에 따라 행정재산 무상사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무상사용 시설현황
 - 1) 사용기관 :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
 - 2) 사용장소 : 금천구청 지하1층

※ (현) 평생학습관 사무실 공간 재배치 후 일부분 사용 예정

3) 사용면적 : 48 m^2

4) 사용목적 : 금천구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 사무국 사무 공간으로 사용

5) 사용료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제1항에 따라 '면제'

6) 사용기간 : 2024. 1. 1. ~ 2028. 12. 31

※ 재단 사무실 별도 이전시까지 5년 단위 허가연장 추진(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제1항 제4호,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에 따라
-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
- (재)금천미래장학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으로 우리구청 지하1층 (현) 평생학습관 사무실 공간 일부분 48 m^2 를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금천구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-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소관 부서에서는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취지에 맞도록 면밀한 계획수립과 다각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